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 요청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근거 마련〉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482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 요청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2025년 7월 15일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해상교통안전법」과 유사하게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상교통안전법」 및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 및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 요청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6)에 따라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0)에서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안 제9조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② (생략)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④ (생략)

③ -----

-----경우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1조의2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1조의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 ⑨ (생략)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_____

제5항 _____

[illegible]

⑦ 제6항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
까지와 같음)

제10조(청문) -----
 -----제5항-----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6)에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도선사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② 「낙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0)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음주, 약물복용, 이에 대한 측정 거부 등의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음주 상태 혹은 음주 측정 불응’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약물·환각물질 투여’와 관련하여

1)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 제3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이 요청된 경우나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음주, 약물복용, 이에 대한 측정 거부 등의 사유’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이 요청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지방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하에서의 운항은 음주운항만큼 해상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약물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기사 면허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약물의 경우 음주와 다르게 그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약물 운항과 관련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점이 있음.

- 참고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도 약물의 영향 하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참고 법률(「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93조(법률 제20864호, 2026. 4. 2 시행)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u>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u> 4. <u>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4의2. <u>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u>

□ 또한,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낙시어선 조종 행위도 「해상교통안전법」에서의 선박 운항행위와 동일하게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는 해상에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법 체계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음주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0)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이 음주, 약물복용, 이에 대한 측정 거부 등의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에 따른 행위로 면허의 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²⁾ 「해상교통안전법」 상 약물에 따른 행위 및 「납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상 음주·약물에 따른 행위로 해기사 면허의 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의 취소 등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8

2) 「선박직원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 제3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